

# 英韓工業所有權類關聯用語

## N

### NEW ZEALAND 뉴질랜드

파리協約(1891年 9月 7日) 加盟國。

**特許** : 種類로는 普通의 特許와 追加特許가 있다.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完全明細書(complete specification) 提出日로부터 16年間이다. 條約出願(Convention application)과 非條約出願(non-convention application)이 있다.

英國의 制度와 거의 비슷한 제도이다.

**商標** : 權利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7年間으로 14년마다 更新할 수 있다. 商品의 類別은 英國과 同一하다.

**意匠** : 權利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5年間이나 그후 5年씩 2回 更新할 수 있다.

### NICARAGUA 니카라구아

파리協約非加盟國, 汎美洲條約加盟國。

**特許** : 種類로는 獨立特許와 追加特許 이외에 니카라구아 國民만이 出願할 수 있는 新產業特許가 있다.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特許登録日로부터 10年間이다. 特許出願에 대해서는 新規性과 特許性에 대해 審査한다. 出願抄錄이 30日間に 3回 公報에 公開된다. 異議申請期間은 30日 이내이다. 明細書의 用語는 스페인語이다.

**商標** : 權利存續期間은 登錄日로부터 10年間이며 10년마다 更新된다.

### nominal [形] 名義上의, 名目的인

### nominal working 名目的 實施, 實施廣告

官報, 新聞, 기타 定期刊行物 등에 特許權者가 차기 소유의 特許權의 讓渡 또는 實施許諾을 할 뜻이 있음을 廣告(一般的으로 實施廣告라 함) 하므로써 不實施에 의한 特許權의 取消를 豫防하는 節次이다. 불리비아, 불가리아, 이라크, 페반논, 니카라구아, 페루, 루마니아, 시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實際に 實施하지 않아도 名目的實施가 公式으로 認定되고 있다.

또 그리스, 이란, 룩셈부르크, 모로코,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도 實施廣告로 實際實施에 替代할 수가 있다.

### non-convention application 非條約出願

파리協約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하지 않고 하는 出願. 英國特許法에 의하면 非條約出願은 假明細書(provisional specification) 또는 完全明細書(complete specification) 중 어느 쪽을 提出해서 出願할 수 있다.

### non-elected invention 非選擇發明

美國特許制度에 의하면 1出願中에 2이상의 서로 獨立된 別個(distinct)의 發明이 클레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發明을 選擇(elect)하도록 要求 받는다. 이 선택에서 빠진 發明을 선택한 發明의 클레임으로 바꾸는 것은 許容되지 않으며 그 出願으로부터 刪除시켜야 한다.

### non-elected species 非選擇種概念

[美國特許制度에 있어서 1出願中의 發明中에서 選擇되지 않은 種概念에 屬하는 클레임]

### non-exclusive license 通常實施權

### nonjoinder [名] 發明者の 不併合

共同發明(joint invention) 임에도 不拘하고 共同發明者가 되어야 하는 者가 共同發明者로 되어 있지 않은 것(misjoinder).

### non-obviousness [名] 發明의 内容이 當業者가 容易하게 判斷할 수 없는 것

美國特許法 第103條에는 다음 規定이 있다.

A patent may not be obtained though the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or describ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of this title,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subject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said subject matter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iv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